

【 2017.1.16(월) 강원일보 】



**황성그라운드골프연합회 장학기금 기탁** 황성그라운드골프연합회(회장: 조태진·사진 왼쪽 세 번째)가 지난 13일 군청을 찾아 황성인재육성장학회(이사장: 조창진·가운데)에 출인원 이벤트를 통해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적립한 장학기금 100만원을 기탁했다.

## 올 건설투자 4.3% 증가 전망 작년의 절반 이하 '뚝' 한은 "주택·토목 건설 모두 둔화"

올해 건설투자가 지난해 절반 이하인 4.3% 증가하는 데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지난 13일 '2017년 경제전망'을 통해 올해 건설투자 증가율이 4.3%를 나타낼 것이라고 발표했다.

지난해 10월 제시한 전망치(4.1%)보다 0.2%포인트 올린 것이다. 주거용건물 건설이 올해 건설투자를 이끌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건설투자는 지난해 증가율(10.9%)에 비해 절반 이하로 떨어진 것이어서 건설경기 하강에 대한 우려가 불거지고 있다.

장민 한은 조사국장은 "작년과 비교해 올해에는 주거용건물 건설과 토목 건설 모두 둔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주거용건물의 경우 벌써 증가폭이 축소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기준 주거용 건축물의 허가·허공·준공 면적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35.5%, 3.4%, 1.0% 감소했다.

여기에 사회기반시설(SOC) 예산 감소에 따라 토목건설도 부진한 모습을 보일 것으로 관측된다.

올해 SOC 예산은 22조1000억원으로 지난해(23조7000억원)보다 1조5000억원 이상 줄었다.

한은은 또한 올해 국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5%로 발표했다. 작년 10월 전망치에 비해 0.3%포인트 낮은 수치다.

세제 및 기준금리는 1.25%로 7개월 연속 동결됐다.

이주원 한은 총재는 "수출이 개선될 조짐을 보이는 데다 경기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어 안정에 초점을 맞춰 금리를 동결했다"고 설명했다.

최남영기자 hinews@

## 낙찰률 하향곡선 그리는 '중심제'

# 하락 유도장치 곳곳에... 개선 필요

### 업계 "동점자 처리·입찰금액 심사방식, 적정공사비 확보 걸림돌"

종합심사낙찰제가 전면 시행된 지 1년이 지난 가운데 낙찰률 하락을 초래하는 구조적인 요인이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다. 현행 동점자 처리 기준과 입찰금액 심사점수 산정 방식이 적정공사비 확보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서둘러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15일 관계기관과 업계에 따르면 종합심사낙찰제의 낙찰자 결정 구조와 입찰금액 심사점수 산정 방식이 낙찰률을 떨어뜨리는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상 종합심사낙찰제 심사 기준을 보면 종합심사 점수가 최고점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때 종합심사 점수가 최고점인 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공사수행능력 점수와 사회책임 점수의 합산점수가 높은 자'를 1

순위로 하고 2순위는 '입찰금액이 낮은 자', 3순위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간 종합심사낙찰제로 낙찰받은 계약금액이 적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들 기준으로도 낙찰자를 가리지 못하면 추첨으로 낙찰자를 선정한다.

그러나 공사수행능력 점수와 사회책임 점수의 합산 점수가 동점일 경우 '입찰금액이 낮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면서 낙찰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낮은 입찰금액을 기준으로 하기 전에 '균형가격에 근접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해 적정공사비 확보에 한 발 다가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균형가격 근접이 유사 답합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균형가격 산정 방법을 개선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게 시장의 공통된 의견이다.

입찰금액 심사점수 산정 방식도 낙찰률을 떨어뜨리는 주범 중 하나로 꼽힌다. 입찰금액 평가는 예정가격과 균형가격을 통해 입찰금액에 따른 가격점수를 일정 수식에 따라 도출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때 수식을 보면 균형가격 미반일 경우에는 A계수를 적용하고 균형가격 초과일 경우 B계수를 적용하는데, B계수는 A계수의 1~2배 범위에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B계수를 A계수보다 크게 하는 것은 저가투찰을 유도하는 만큼 계수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최저가낙찰제를 대신해 도입한 종합심사낙찰제의 낙찰률이 최저가낙찰제의 낙찰률에 수렴해가고 있다"면서 "곳곳에 낙찰률을 떨어뜨리도록 하는 장치들이 숨어 있는 만큼 추가적인 제도 개선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경남기자 knp@

## 낙찰률 하락 위한 법 개정 추진되는 '중평제'

# 업계 "변형된 최저가 전략 우려"

### 오늘 행자부에 탄원서 제출 계획... "중심제와 단순 비교해선 안돼"

건설업계가 행정자치부의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을 반대하는 탄원서 제출을 보이고 있다. 낙찰률 하락을 위한 기준 개정이 이뤄지면 종합평가낙찰제(이하 중평제)가 새로운 최저가낙찰제로 전락할 것이라 입장이다.

15일 소식통에 따르면 건설업계는 행자부의 중평제 입찰가격평가 산식 개정 저지를 위한 탄원서 서명을 받고 있다.

이는 행자부가 종합심사낙찰제(이하 중심제)에 비해 약 6.7%포인트가량 높은 낙찰률을 낮추고자 중평제 결정기준의 입찰가격 평가 산식을 개정하려는 데 따른 것으로, 건설업계는 탄원 서명부를 오늘(16일) 행자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중평제의 경우 최저가가 적은 예산 속에 무리하게 공사를 발주하는 과정에서 단가

와 물량 등을 정정보다 적게 책정함에 따라 예정가격이 높아져 낙찰률이 중심제보다 높게 형성되고 있다.

이에 따라 건설업계는 중평제가 도입됐어도 현상의 공사비 부족은 최저가낙찰제와 마찬가지로 심각한 상황이라고 호소하고 있다. 더욱이 중평제는 지역별 생활임금과 지역규모 공동도급 적용 등으로 중심제와 공사수행 여건 및 예정가격 적용기준이 달라 단순히 낙찰률만 비교해 예산이 낭비된다고 판단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행자부가 중평제의 가격평가 산식을 개정하면 낙찰률이 80%대 초반까지 하락할 것이라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중평제 낙찰률이 중심제보다 높은 것은 건설업체가 실행 가능한 입찰가를 투찰한 결과로, 중심제 낙

찰률과 단순 비교할 대상이 아니다"며 "공사비 절감을 위해 인위적으로 낙찰률을 낮추는 것은 중평제 도입 취지에 부합하지 않게 변형된 최저가낙찰제로 전락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성토했다.

다른 관계자도 "중평제의 경우 시범사업 없이 본격 시행된 지 수개월에 불과해 공사 발주는 18건, 이 중 개찰은 12건에 그쳐 제도의 성과를 평가하기에도 이르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건설업계는 최근 중평제 낙찰률 하락 원인 분석과 예정가격 산정의 적정성 여부, 낙찰자의 현장 실행 예산, 완공 뒤 시설물 완성도와 품질 등에 대한 충분한 조사·분석을 거쳐 제도 개선 여부를 판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행자부 관계자는 "기준 개정에 대해 면밀한 검토를 진행 중으로 아직 확정된 바는 없다"고 밝혔다. 채화천기자 cho@

## 아하! 그렇구나

### 국가의 고지의무 위반과 손해배상

**Q**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시설공사계약의 계약담당 공무원이 회계예규를 준수하지 아니하고 표준품셈이 정한 기준에서 예측 가능한 합리적 조정의 범위를 벗어난 방식으로 기초예비가격을 산정한 사정을 입찰참가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경우 낙찰자가 계약금액을 초과하여 지출한 공사비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지?

**A** 계약담당공무원이 예산 사정을 이유로 국가가 당사자인 계약의 일반적인 거래관행이나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 조정의 범위를 넘었다고 할 만큼 과도하게 노무 수량을 축소하거나 삭감하여 건축사무소로 하여금 설계금액을 감액하도록 함으로써 회계예규가 정한 준칙 및 표준품셈에 의한 가격 기준에서 현재까지 벗어난 방식으로 원가산정을 하고, 이에 근거하여 기초예비가격을 결정하고도 이를 입찰참가자들에게 알리지 않았고, 낙찰자가 실제 공사를 수행한 결과 계약금액보다 많이 지출된 금액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한 사안입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회계예규는 계약담당공무원의 실무 준칙에 지나지 않아 회계예규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나 "계약담당공무원이 회계예규를 준수하지 아니하고 표준품셈이 정한 기준에서 예측 가능한 합리적 조정의 범위를 벗어난 방식으로 기초예비가격

을 산정하였음에도 그 사정을 입찰공고에 전혀 표시하지 아니하였고, 낙찰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았더라면 입찰에 참가할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하게 고려하였을 것이면 경합최상 명백한 경우에는, 국가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입찰공고 등을 통하여 입찰참가자들에게 미리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국가가 그러한 고지의무를 위반한 채로 계약조건을 제시하여 이를 통상의 경우와 다르지 않을 것으로 오인한 나머지 제시 조건대로 공사계약을 체결한 낙찰자가 불가피하게 계약금액을 초과하는 공사비를 지출하는 등으로 손해를 입었다면, 계약 상대방이 그러한 사정을 인식하고 그 위험을 인수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가는 고지의무 위반과 상당 인과관계 있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3다23617 판결[손해배상(기)])"이라고 판시하고 다만 낙찰자의 과실이 있다 하여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70%로 제한하였습나다.

예산 사정을 이유로 과도하게 기초예비가격을 축소하고 설계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도 거부한 국가에 대하여 신의적상 고지의무와 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것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계약에 있어 바람직한 사례가 될 것입니다.

이동원  
법무법인 이강 변호사

